

어 선 세 무

어선어업에 관한 세무행정 (X)

—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제재 —

수협중앙회 기획실

차 장 고 석 환

1. 세 무 조 사

가. 세무조사의 의의

요즈음 항간에서는 세무관서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납세자는 이에 대비코자 세금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기풍과 연구의 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라 함은 세무관서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각 납세자의 실태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식판단하여 적절한 과세표준(납세의무를 발생케 할 목적을 가지고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을 수량적으로 확정기 위한 기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과세액, 즉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을 파악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흔히 세무조사라는 용어는 법인세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 관계의 조사만을 이야기하고 주세, 특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 관계의 조사는 검사라고 불리우고 있어 간접세에 관한 조사는 세무조사가 아닌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이며 간접세의 검사도 당연히 세무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회계장부와 증빙의 조사, 소위 말하는 「실지조사」만이 세무조사라고 오인되기도 하나 정확한 과세표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납세자의 실태를 인식 판단하는 모든 활동이 일괄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직접, 간접적인 조사는 물론 추계조사, 실지조사, 준비조사, 과세자료의 수집등이 모두 세무조사

에 포함됩니다.

조세있는 곳에는 세무조사가 따르게 마련인 바 어선어업을 영위하는 수산인은 물론 영세어민도 세무당국에서 실시하는 수산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법인세조사, 선원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징수여부를 판단기 위한 원천세조사 등 세무조사를 수없이 받아왔을 것입니다.

나. 세무조사의 목적과 방향

(1) 세무조사의 목적

우리나라 헌법 제 3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또한 헌법 제 95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것 이외의 조세는 부담할 의무가 없고 또한 공정 평등하게 부담할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규정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원칙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공평한 조세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과 기타의 법규에 근거한 납세의무의 이행이 적정하였는가의 여부를 검증하는 민주적인 세무행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 곧 세무조사일 것입니다.

(2) 세무조사의 방향

따라서 정부는 세무조사의 방향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적법한 세무행정을 통하여 조세징의를 구현하는데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데 있어 어느누구도 탈루됨 없이 공평하게 조세를 부담토록 실현시키는데 있을 것입니다.

(3)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민감한 반응

그러나 세무조사는 그 목적이야 어떻든 간에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의무자로서는 불안감을 가져 가급적 세무조사를 피하고자하는 심리가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사를 당하면 세액의 추징은 물론 기업 내부의 비밀보장 등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코 모두 같을 것입니다. 수산인 여러분도 매년 수없이 받는 세무조사시 마다 그런 감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에 감안하여 정부도 가급적이면 세무조사를 피하고자 점진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세무조사의 종류

가. 조사수단으로 본 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선 조사수단으로 본 세무조사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세무조사 - [(1) 임의조사
(2) 강제조사

(1) 임의조사

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조사방법으로서 이는 각 세법에서 규정한 질문 조사권에 근거하여 집행되며 강권을 발동하는 일없이 납세의무자의 동의(同意)하에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할 때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의조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임의조사에는 다시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로 구분이 됩니다.

임의조사 - [(가) 서면조사
(나) 실지조사

(가) 서면조사

서면조사라 함은 세무관서가 그의 사무실에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나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서면조사는 다시 협의의 서면조사와 준비조사로 나누어 지는 바, 이들은 주로 세무관서의 내부에서만 집행되므로 내부조사라고도 합니다.

서면조사 - [협의의 서면조사
준비조사

○ 협의의 서면조사 : 실지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신고서나 기타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사하는 서면조사

○ 준비조사 : 실지조사를 위한 현지 출장조사에 앞서 조사받는 사업자의 객관적 여건과 정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서면상으로 추계하여 실지조사의 준비로서 행하는 조사

(나) 실지조사

실지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여 실지로 당해 사업년도 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결산서나 비치, 기장한 장부와 관계 증빙서류에 의거 질문·검사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실지조사에는 호순조사, 기준조사, 특별조사, 일반조사 및 반면조사등으로 구분되며 이를 일명 외부조사라고도 합니다.

실지조사 - [호순조사 (戶順調查)
기준조사
특별조사
일반조사
반면조사 - [거래처조사
은행조사

(2) 강제조사

강제조사는 임의조사와 성격을 달리하여 납세의무자의 동의유무(同意有無)에 불구하고 세무관서가 일방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강제적으로 조사에 필요한 임검, 수색, 압수 및 영치등을 행하며 이를 통칭 탈세자에 대한 세무사찰이라고 합니다.

※ 임의조사(세무조사)와 강제조사(세무사찰)의 차이

	임의조사 (세무조사)	강제조사 (세무사찰)
대 상	일반적인 조세징수를 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세금을 포탈한 경우 등 조세법칙행위(탈세 행위)가 있을 때
조 사 방 법	납세자 제시자료에 의한 조사	입검, 압수, 수색, 영치에 의한 조사
납세자동의(승낙)여부	동의(승낙)를 얻어야 함	동의(승낙)를 필요치 않음
제 제 방 법	세액 및 가산세 추정	세액 및 가산세 추정은 물론 조세벌도 병과한다

나. 세법상 세무조사의 종류

현행 각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세법의 기본이고 또한 민주세정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조사 결정은 어디까지나 이상인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신고서대로 결정하는 이외에 서면조사결정과 실지조사결정 그리고 후계조사 결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신고조사결정

신고서 대로 결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다음 두가지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 소득세에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결정

○대상자 :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정상적인 수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자로서 당해 년도의 직전년도의 수산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즉, 수산물 판매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

○신고결정요건 : 위 열거한 영세 수산업자가 국제청장이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일정율 이상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 개정결정이 없는 한 신고서대로 결정

(다)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내용에 개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조사결정 외에도 실지조사하여 개정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조사

성실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방법으로서 당해 기업의 신고서 기타 이에 관련된 첨부서류에 의해서만 조사하고 실지조사가 배제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서면조사의 주요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 119 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대상

○녹색신고자나 국제청장이 정한 일정율 이상 신고자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사업자 장부의 기장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

○관납 또는 군납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또는 자료보고가 성실한 사업자로서 국제청장이 확인하거나 지정한 자는 장부가 없더라도 비치한 거래에 관한 서류에 의거 소득세 과세표준화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을 때

(나) 법인의 경우는 '80.1.1 시행된 법인세법에서 전면 신고 납세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녹색신고법인 또는 성실신고법인에게만 실시하던 서면조사제도는 없어 졌습니다.

(3) 실지조사

실지조사라 함은 실지로 기업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전반적인 회계기록내용을 실질적으로 대사 확인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조사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세의 경우

수산업자등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 184 조 및 제

185 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경우 그 비치 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나)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어도 신고서를 세법 소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지로 법인사업장에 임하여 당해 신고서류는 물론 그 기업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각종 증빙물건을 근거로하여 신고내용의 적법성을 확인·검토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4) 추계조사

(가)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당해 기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인 때

○ 또는 기장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이나 각종 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또는 기장내용이 원재료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등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인정과세라고도 합니다.

(나) 추계조사의 수단으로는

○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 동업자 균형등에 의하는 기준등이 있습니다.

3. 세무조사로 인한 제재조치

가. 가산세의 추정

현행 각종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적정한 납세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적정과세의 실현과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적정과세의 실현과 납세의무자 간의 균형을 도모코자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그 제재조치로써 당초 납부할 세액과 그외에 다음과 같이 가산세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신고불성실 및 기장불성실 가산세

○ 개인수산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가 산 세 의 종 류	가 산 세 의 계 산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소득세 산출세액 × $\frac{\text{무신고, 과소신고 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10\%$ ※ 추가납부없는 경우, 가산세 없음
② 기장불성실 가산세 (무기장, 과소기장)	소득세 산출세액 × $\frac{\text{무기장, 과소기장 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10\%$
위 ①, ②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위 ①, ②중 많은 금액을 택함

○ 법인수산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경우

가 산 세 의 종 류	가 산 세 의 계 산
①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법인세 산출세액 × $\frac{30}{100}$ 단, 가산세가 수익금액의 $\frac{1}{1,000}$ 에 미달시는 수익금액의 $\frac{1}{1,000}$ 을 가산세로 한다.

가 산 세 의 종 류	가 산 세 의 계 산
② 과소 신고가산세 경우	①의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받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의 경우 ; 과소신고 소득 산출세액의 $\frac{10}{100}$ • 중과소 가산세의 경우 ; 과소신고소득 산출세액의 $\frac{30}{10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개인수산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가 산 세 의 종 류	가 산 세 의 계 산
무납부 과소납부 가산세	$(\text{소득세 산출세액} - \text{감면 또는 세액공제} - \text{기납부세액}) \times \frac{10}{100}$

○ 법인수산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경우

가 산 세 의 종 류	가 산 세 의 계 산
무납부, 과소납부 가산세	• 미납부 세액 100 원에 대하여 일변 5 전, 단 가산액이 미납 부세액의 $\frac{10}{100}$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frac{10}{100}$ 을 가산세로 함

(3)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불성실이행 가산세

(가) 원천징수 불성실이행 가산세

○수산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및 자유직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부를 대위하여 세법 소정의 세금(소득세, 법인세, 방위세, 주민세)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 $\times \frac{10}{100}$
 선주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

징수 불이행시에도 이처럼 원천징수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나) 지급조서 불성실보고 가산세

수산업자가 위 열거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사실에 대한 세무보고(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징당합니다.

○가산세 해당 수산업자

-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수산업자(따라서 개인수산업자로서 간이 및 일기장의무자는 동가산세를 추징받지 아니합니다)

- 모든 법인수산업자

○ 가 산 세 율

구 분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수산업자	법 인 수 산 업 자
미 제 출 가 산 세	미제출금액 $\times \frac{1.5}{100}$	미제출금액 $\times \frac{3}{100}$
지 연 제 출 가 산 세	지연제출금액 $\times \frac{3}{1,000}$	지연제출금액 $\times \frac{3}{1,000}$
불 명 제 출 가 산 세	불명제출금액 $\times \frac{1.5}{100}$	불명제출금액 $\times \frac{3}{100}$

(4) 기타

이상 열거한 이외에도 다음 열거한 가산세 추정제도가 있습니다.

- 수정신고 납부 가산세
- 계약서부분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대차대조표 무공고 가산세

나. 조세범으로서의 제재

(1)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률의 별도 제정

조세범이라 함은 조세의 부과 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법, 즉 조세범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형벌이며 이러한 조세범을 과할려는 소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조세범에 대하여 각 세법의 특수성을 고려한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그에 관한 절차법으로서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 가산세와 함께 행정벌 제재의 일종입니다.

(2) 조세범의 구분

○조세범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의 포탈범과 조세의 질서범으로 대별되고 있는 바 이중 포탈범이라 함은 부정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면탈하거나 환급을 받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조세범으로써 일면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조세 질서범은 조세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각종의 명령이나 금지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조세청구권은 침해하지 아니하나 그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와 같은 포탈범과 조세질서범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사실에 상응하는 조세벌이 과하여진과 동시에 양벌규정(兩罰規定)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양벌규정이란 함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당해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로 각각 이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형사벌(刑事罰) 조서의 제재

위 「가, 나」는 행정벌의 제재이나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형사벌에 의한 제재가 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공무집행 방해죄

세무공무원의 조사집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136조 내지 제137조 참조)

(2) 직권남용죄

세무공무원이 조사집행을 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고 세법상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반대로 마땅히 하여야 할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어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123조 참조). — 계 속 —

